변경대비표

1. 펀드명: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삭제 및 추가
   -'취득 시' 평가등급 적용 반영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환매주기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2.01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 UBS 차이나듀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차이나 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하나 UBS 차이나 포커스 해외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2.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2.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8.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8.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 2 호나목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호나목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호다목	제 2 호다목

	(생략)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생략)	(생략, 현행과 동일)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생략, 현행과 동일)
	제 6 호라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6 호라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6 호바목 (생략)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생략)	제 6 호바목 (생략, 현행과 동일)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생략, 현행과 동일)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 4 항제 2 호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 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영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4 항제 2 호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법 시행령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6 항 신설	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 17 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②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9 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8 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 33 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 년 12 월 1 일)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 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제 5 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략)	제 2 항제 5 호 (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생략, 현행과 동일)
	제 4 항 신설	④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⑥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항 신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변경등록신청서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AO054)
하나 UBS 차이나듀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O388]</td><td>[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차이나 대표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차이나 포커스 해외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r>
<tr><td></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업데이트)</td></tr>
<tr><td></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
<tr><td>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AO054</td></tr>
<tr><td>하나 UBS 차이나듀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AO388</td></tr>
</table></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펀드코드</th></tr>
<tr><td>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AO054</td></tr>
<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7724</td></tr>
<tr><td>하나 UBS 차이나 포커스 해외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59311</td></tr>
</table></td></tr>
</table>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②채권: (투자대상내역)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②채권: (투자대상내역)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④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⑦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 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영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table>
<tr><td></td><td>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변경 발효일 1 개월 전까지 국내에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td><td>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td></tr>
<tr><td></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td><td>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투자신탁에게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
<tr><th>T 일</th><th></th><th>T+3 일</th><th>T+8 일</th></tr>
<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
</table></td><td>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투자신탁에게 제 8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
<tr><th>T 일</th><th></th><th>T+3 일</th><th>T+7 일</th></tr>
<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
</table></td></tr>
<tr><td></td><td>2) 오후 5 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6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투자신탁에게 제 1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
<tr><th>T 일</th><th></th><th>T+4 일</th><th>T+9 일</th></tr>
<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
</table></td><td>2) 오후 5 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6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투자신탁에게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
<tr><th>T 일</th><th></th><th>T+4 일</th><th>T+8 일</th></tr>
<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
</table></td></tr>
<tr><td></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tr>
</tabl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 년 12 월 1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신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신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 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모집합투자기구 '취득 시'평가등급 적용반영

2)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단축)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 년 12 월 01 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7 조(환매가격	①(생략)	①(생략, 현행과 동일)

및 환매방법)	②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 년 12 월 1 일)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 기구의	**제 2 항** 5.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제 2 항** 5.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해지)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②채권: (투자대상내역)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②채권: (투자대상내역)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④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⑦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2)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 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영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법 시행령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제한사항 (신설)	(3) 기타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변경 발효일 1 개월 전까지 국내에서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

<table>
<tr><td></td><td>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td><td></td></tr>
<tr><td></td><td>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tr><th>T 일</th><th></th><th>T+3 일</th><th>T+8 일</th></tr><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table></td><td>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tr><th>T 일</th><th></th><th>T+3 일</th><th>T+7 일</th></tr><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table></td></tr>
<tr><td></td><td>2) 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tr><th>T 일</th><th></th><th>T+4 일</th><th>T+9 일</th></tr><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table></td><td>2) 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able><tr><th>T 일</th><th></th><th>T+4 일</th><th>T+8 일</th></tr><tr><td>환매청구일</td><td></td><td>기준가적용일</td><td>환매대금지급일</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r>
</table>

	주 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0.720%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 년 12 월 1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나. 과세 **(신설)**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방법 17 시 이전: 제 9 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 후: 제 10 영업일 지급	환매방법 17 시 이전: 제 8 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 후: 제 9 영업일 지급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1) 모투자신탁 추가

   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3) 수익증권 판매가격 적용일 변경

   4)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6)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및 위험등급 변경

   7)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2.01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
<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0% 수준</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
<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100% 이하</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하나 UBS 차</td><td>주요투자대상</td><td>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td></tr>
</table>
</td>
</tr>
</table>

		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만
			투자목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투자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

<table>
<tr>
<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td>
<td>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
<td>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관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td><td>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td></tr>
</table>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 rowspan="2">100% 이하</td><td>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td></tr>
<tr><td>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td></tr>
</table>
</td>
</tr>
</table>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table>
<tr><td></td><td></td><td>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1)</td></tr>
<tr><td></td><td>(2) 투자제한

(신설)</td><td>(2) 투자제한

-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2)</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0% 수준</td></tr></table>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100% 이하</td></tr></table>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td></tr>
</table>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Benchmark)** 주 1)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 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Benchmark)**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중국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 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다.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다.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24.78%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5.38%임에 따라 6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 년 12 월 1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나. 과세 (신설)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table>
<tr><td></td><td>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d>(China A Share)을 주로 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td></tr>
<tr><td>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td><td>매입방법
· 17 시 이전 : 제 2 영업일
· 17 시 경과 후 : 제 3 영업일</td><td>매입방법
· 17 시 이전 : 제 3 영업일
· 17 시 경과 후 : 제 4 영업일</td></tr>
<tr><td>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집합기구의 투자목적]

(신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중국 주식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집합기구의 투자목적]

<table><tr><th>모투자</th><th>투자목적</th></tr></table></td></tr>
</table>

	(2) 투자대상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수준 **(3) 비교지수(Benchmark)**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 지수 * 90%) + (Call	<table><tr><th>신탁명</th><th colspan="2"></th></tr><tr><td rowspan="2">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투자대상</td><td>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td></tr><tr><td>투자목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table> **(2) 투자대상**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중국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table>
<tr>
<td></td>
<td>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집합기구의 투자전략]

(신설)</td>
<td>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 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집합기구의 투자전략]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투자대상</td><td>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td></tr>
</table>
</td>
</tr>
</table>

	3. 운용전문인력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24.78%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5.38%임에 따라 6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관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수준으로 한다.(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1. 제 3 조제 4 항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2.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수 있다.	
제 25 조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 년

		12 월 1 일)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 5.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2 항** 5.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경우는 제외한다. ⑤(신설)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별첨 1> 투자대상: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중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②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③자산유동화 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⑨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⑩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별첨 2> 투자제한: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투자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 제 5 호 내지 제 8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6 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음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법 시행령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당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음	

<별첨 3> 투자설명서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UB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설정일	1996 년 11 월 15 일
주요투자대상	순자산의 최소한 70%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지분증권
주요투자전략	이 상품은 중국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 주, 레드칩 종목 선정을 통해 중국 경제 전 싸이클에 걸쳐 투자기회를 포착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대형주에 집중하기 보다는 업종 내 성장성이 큰 우량종목 비중에 집중 투자합니다.
펀드 순자산	약 2,228 억원(2013 년 12 월 23 일 기준)
책임운용역	Bin Shi [운용중인 자산규모: 14 억 CHF
비교지수	MSCI China *100%
국내 등록일	2010 년 2 월 22 일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는 스윙싱글프라이싱(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스윙싱글프라이싱(SSP) 제도란 해당 펀드에 추가 자금 유입과 자금의 유출이 있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해당 자금 유입 및 유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가 산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매입 또는 환매할 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보수 및 비용 예시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거래 비용은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2%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MSCI China *9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중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China *95% + call 5%**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중국 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차이나포커스해외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 년 12 월 1 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AO05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재간접구조 중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재간접구조 중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table>
<tr>
<td></td>
<td>100%이하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100% 이하</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
<td>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100%이하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100% 이하</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투자대상</td><td>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td></tr>
<tr><td>투자목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td><td>에 투자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100% 이하</td><td>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며, 주된 투자대상이 중국 주식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td></tr></table></td><td colspan="3">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 rowspan="2">100% 이하</td><td>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며, 주된 투자대상이 중국 주식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td></tr><tr><td>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td></tr></table></td></tr>
<tr><td></td><td>(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td><td colspan="3">(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td></tr>
</table>

<table>
<tr><td></td><td>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td><td>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신설)

(2) 투자제한

(신설)</td><td>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1)

(2) 투자제한

-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2)</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중국포커스주식 재간접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100% 이하</td></tr></table></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중국포커스주식 재간접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td><td>100% 이하</td></tr></table></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탁 [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집합기구의 투자목적]

(신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집합기구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투자목적</th></tr>
<tr><td rowspan="2">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투자대상</td><td>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td></tr>
<tr><td>투자목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하나 UBS</td></tr>
</table>

<table>
<tr>
<td></td>
<td>(신설)

<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18 조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1. 제 3 조제 4 항의 모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가.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나. (신설)	1. 제 3 조제 4 항의 모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가.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나.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생략)	2. (생략, 현행과 동일)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별첨 1> 투자대상: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중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②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③자산유동화 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⑨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⑩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마.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바.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별첨 2> 투자제한: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투자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 제 5 호 내지 제 8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6 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음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법 시행령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당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음	

<별첨 3> 투자설명서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UB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설정일	1996 년 11 월 15 일
주요투자대상	순자산의 최소한 70%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지분증권
주요투자전략	이 상품은 중국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 주, 레드칩 종목 선정을 통해 중국 경제 전 싸이클에 걸쳐 투자기회를 포착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대형주에 집중하기 보다는 업종 내 성장성이 큰 우량종목 비중에 집중 투자합니다.
펀드 순자산	약 2,228 억원(2013 년 12 월 23 일 기준)
책임운용역	Bin Shi [운용중인 자산규모: 14 억 CHF
비교지수	MSCI China *100%
국내 등록일	2010 년 2 월 22 일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는 스윙싱글프라이싱(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스윙싱글프라이싱(SSP) 제도란 해당 펀드에 추가 자금 유입과 자금의 유출이 있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해당 자금 유입 및 유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가 산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매입 또는 환매할 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보수 및 비용 예시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거래 비용은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2%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MSCI China *9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중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China *95% + call 5%**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중국 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